

(앞면)

사업장 자동이체 신청서

통합납부자번호		사업장명		사용자성명	
사업자등록번호		사업장관리번호		※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에 다수의 통합납부자번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합납부자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
사업장주소	(-)				
연락처	전화번호 :		휴대폰 :		

합산자동이체 신청

신청내용	☐ 신규 ☐ 변경 ☐ 해지				
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		
예금주		예금주주민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예금주 전화번호	
자동이체시작월	월	이체 희망일	☐ 익월 10일 ☐ 말일	(자동이체시작월 7월, 이체희망일 '익월 10일' 선택할 경우, 8월 10일 최초 출금됨)	
출금 우선순위	☐ 지정 ☐ 미지정	지정시, 출금 우선순위를 1,2,3,4 로 표기 건강() 연금() 고용() 산재()	(출금 우선순위 미지정시, 출금된 금액은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보험별로 배분됨)		

※ 합산자동이체는 합산고지 신청된 사업장만 가능하므로 합산고지 미신청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바랍니다.
 ※ 합산자동이체는 하나의 보험이라도 3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.
 ※ 적용 대상 가입보험이 증가한 경우 합산고지 및 합산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.
 ※ 합산자동이체에 포함된 고용-산재보험은 자동이체로 납부기한 내 완납 시 각각 250원 감액혜택 적용됩니다.

구분 자동이체 신청

구분전체 [☐ 건강장기요양보험 ☐ 국민연금 ☐ 고용보험 ☐ 산재보험]					
신청내용	☐ 신규 ☐ 변경 ☐ 해지				
금융회사명		계좌번호			
예금주		예금주주민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예금주 전화번호	
자동이체시작월	월	이체 희망일	☐ 익월 10일 ☐ 말일	(자동이체시작월 7월, 이체희망일 '익월 10일' 선택할 경우, 8월 10일 최초 출금됨)	
선택 가 재	체납보험료이체	☐ 분할납부 ☐ 단순체납: 년 월 일 ~ 년 월 일 (개월)			□ 당월분 제외 (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"☑"표시)
	대납자 성명 (관계)	대납자 전화번호			
		동의여부(통화일시)		☐ 동의함()	

※ 3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.
 ※ 고용산재보험은 자동이체로 납부기한 내 완납 시 각각 250원 감액혜택 적용됩니다.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]

- 수집 및 이용목적 :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
- 수집항목(개인정보) :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계좌정보
- 보유 및 이용기간 :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
-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(개인정보) 동의함 ☐ 동의안함 ☐

※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.

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(거래금융기관명, 영업점명, 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)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'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'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년 월 일

신 청 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< 기재요령 >

- 합산과 구분 자동이체 신청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"신청내용"에 "☑"표시를 하고 "금융회시명", "계좌번호", "예금주", "예금주주민번호"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.
- "자동이체 시작월" 은 자동이체 시작을 희망하는 보험료의 고지월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"체납보험료 이체"와 "세대주(대납)의 경우" 선택기재사항입니다. 해당 사항인지 확인하시고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'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' 내용을 정확히 읽으시고, 자동이체 원할 경우 반드시 '동의함'에 "☑" 표시해 주십시오.
- 기타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-1000 번으로 문의하십시오.

<자동이체 거래 약관>

- 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계좌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)과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2조(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"보험료"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·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 따른 부담금 및 「석면피해구제법」에 따른 부담금을 말합니다.
 2. "합산자동이체"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(이하 "출금계좌"라 한다)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제3조(자동이체 신청)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(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) 3일(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)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②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, 합산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③ 신청인이 제1항,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됩니다.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.
- 제4조(출금시기) ①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, 미출금 또는 일부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,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(再)출금됩니다.
-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출금일을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일에 선(先)출금되며, 미출금 또는 일부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, 그 달 25일,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(再)출금됩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금일이 토요일,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.
- 제5조(출금) 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.
- ②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.
- 제6조(출금 기준)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, 이체 시 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.
- 제7조(출금우선순위) 납기일에 공단에 이체되는 보험료 외에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제8조(과실 책임) ①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한다)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제9조(자동이체의 해지) ①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자동 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(납부의무자 외의 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이체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.
-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보험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자동이체 대상 보험 외의 보험에 추가 적용을 받게 되면 해당 합산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추가된 보험을 포함한 합산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제10조(정보의 제공) ①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보 [거래은행(금융기관)명, 지점명, 계좌번호,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등]을 제공합니다.
- ② 공단은 민원상담 및 자동이체 신청(신규변경·해지) 접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정보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합니다.
- 제11조(약관의 변경)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,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제12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